

국 민 안 전 처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배수펌프장 운영·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, 영월군, 인제군, 정선군, 철원군, 평창군,
화천군

관 련 자 ① 양양군 ○○○○과

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② 정선군 ○○○○과

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08. 1. 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양양군에서,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1. 12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각각 「배수펌프장」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¹¹⁴⁾을 성실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「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」(前 소방방재청)에 따르면 배수펌프장 등 주요시설은 같은 지침 제3장(배수펌프장 주요시설)¹¹⁵⁾ 및 제7장에 따라

114)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방재시설) 제6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2.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115) 제3장 배수펌프장 주요시설

적절하게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그러나 강원도 삼척시 및 고성·양양·영월·인제·정선·철원·평창·화천군 등 9개 시·군은 소관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월 점검과 년 점검 및 검사항목 중 제작사 검사(펌프, 수문, 밸브, 각종기록계, 크레인)나 해체 점검 등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점검 하였다.

특히, 양양군 및 정선군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크레인 정기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는 등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삼척시장, 고성군수, 양양군수, 영월군수, 인제군수, 정선군수, 철원군수, 평창군수, 화천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배수펌프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법한 조치는 물론, 담당자에 대해 직무 감독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3.2 펌프설비

라. 기타 : 수중펌프는 일반적으로 일상점검, 월점검, 연점검, 해체점검 등으로 분류되며, 각 점검별 유지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. 일상점검(주1회), 월점검, 연점검, 해체점검(5년에 1회, 종합점검)

제6장 수문 운영관리 및 점검 장비

6.2 수문관리자의 지정

- 1) 관리주체기관의 장은 수문별로 방재관련과에 정·부 배수펌프장용 수문관리자를 지정한다.
- 5) 관리주체기관의 장은 수문관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문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

제7장 기타

7.4 제작사 점검

- (1) 대상시설 : 펌프, 수문, 밸브, 제진기, 각종기록계, 크레인 등
- (2) 점검방법 : 관리주체별로 제작사와 협의 매년 2.28일까지 점검 실시와 함께 전년도 수방시설 운영중 발견된 미비점도 제작사의 자문을 받아 보수·정비
- (3) 조치방법 : 경미한 부분은 자체 조치하고, 자체 정비가 어려운 사항은 공사 발주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간전 까지(5.15일) 정비 완료

7.5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(전기설비 분야)

- (1) 정기검사(법적검사) : (대상시설) 수변전 설비 / (주기) 3년 주기 2월 28일 / (검사기관) 한국전기안전공사
- (2) 요청검사 : (대상시설) 수변전 설비 및 부하시설 / (주기)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(2월 28일까지 점검) / (점검기관)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기술인협회,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